

어획물운반업 폐업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성명(명칭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 (전화번호)		
등록번호	어획물운반업 등록 : 제 - 호		
폐업일자			
폐업사유			

「수산업법」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획물운반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어획물운반업등록증(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습니다.)	수수료 조례에 따름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